

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

2008. 5. 28. 제정

2018. 6. 20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생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. (개정 2015.4.21.)

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21세기 생명과학의 시대를 선도하는 융합과학기술의 핵심인 시스템생물학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의약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연과학대학의 시스템생물학 및 생명정보학 관련 분야의 연구 기반 확립 (개정 2015.4.21.)
2.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전문화된 연구 집단 육성
3. 국내외 시스템생물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수행
4. 시스템생물학 기반의 연구결과를 신약개발 및 임상의료에 적용하고 바이오벤처 기업을 통한 사업화 추진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5.4.21.)

③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5.4.21.)

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는 기초연구부, 실용화부, 대외협력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기초연구부는 시스템생물학 및 생명정보학 관련 분야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실용화부는 특허출원 및 등록, 연구소 기술이전, 벤처창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대외협력부는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, 국내 타대학 부설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교육의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행정실은 기획, 학술, 재정,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6 조 (부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5.4.21.)

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

시스템생물학연구소 규정

언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5.4.21.)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5.4.21.)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8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(개정 2015.4.21.)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연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4.21.)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 간접연구비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연구

소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5.4.21., 2018.6.20.)

부 칙(2008. 5. 28 제정)

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4. 21 개정)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